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 의뢰물건(권리)			
의뢰물건 소재지			
소유자 (권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		담보, 처분, 매수, 일반시가, 임대차, 자산재평가, 기타(일반담보)	
감정평가서의 제출처		(전화번호:)	
담보인 경우 채무자명			
의뢰물건 추정금액		감정평가서 소요부수 부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	4. 건축물대장 부
		2. 지적도 또는 입야도등본 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3. 토지임야대장등본 부	6. 기타(기계목록 등) 부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위 의뢰인 주 소 기관 또는 상호 성 명		20 년 월 일 (인)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세무보고용 기재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2) 상 호(법인명)	(3) 성명	
	(4) 사업장 소재지		
별첨약정사항 제10항에 의거 소유자와 의뢰인이 다른 경우 본인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의뢰인 가(주)우리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의뢰함을 동의함.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소유자(권리자) 성명		금융기관등 담보감정인 경우 위의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대출임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금융기관명 부 점	
(주)우리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3 서초한신리빙타워 303호 ☎ 02-6084-6000 FAX 02-6677-1552 신협 : 131-016-887119, 농협(지역) : 355-0046-9789-03 예금주:(주)우리감정평가법인		착 수 금	입금확인

약정사항

1. 감정평가의뢰 물건(권리)중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감정평가의뢰 접수 시 소정의 감정평가 착수금(수도권지역 ₩200,000, 그 외지역 ₩300,000)을 납입하여야합니다.
4. 감정평가보수는 당사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평가불능 사유가 평가의뢰인(담보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등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평가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의뢰 후 당사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50%(최저액₩50,000)를 당사에 귀속하며 현장 조사 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와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항의 단서, 제7항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 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9. 당사의 승낙 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감정평가의뢰 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만약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당사는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일체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12. 당사와 감정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 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